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 및 주간 지정〉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9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9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8.
- (3) 회 부 일 : 2025. 12.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

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조의4(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 ①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주간으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보전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2025년부터는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구매하여야 함.²⁾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등 임.³⁾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전까지는 시행령에서 1%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2월,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1.1%로 상향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목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보전을 통해 자립과 사회통합 지원
우선 구매비율	대상기관 총 구매액 2% 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2026년도 우선구매비율은 1.1%
적용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구매촉진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수의계약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 이후(법정 의무구매는 2011년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 비율은 2015년부터 1% 이상을 대체로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한 공공기관의 비율은 2024년 기준 57.5%에 그치고 있고, 같은 해 기준 2년 이상(2023~2024년) 연속하여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약 30%(3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의무구매가 적용된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연속하여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14개소나 존재하는 등,

기관별 이행 수준의 편차가 크고, 일부 기관에서는 미이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구매액 (억원)	우선 구매액 (억원)	우선 구매비율 (%)	법정 비율	충족 공공기관 (개소,%)	미충족 공공기관 (개소,%)
2008년	11,771	1,320	11.2	-	-	-
2009년	13,519	1,658	12.3	-	-	-
2010년	26,598	2,665	10.5	-	-	-
2011년	424,993	2,358	0.55	1%	183(49.2)	189(50.8)
2012년	513,917	2,526	0.49	1%	193(51.3)	183(48.7)
2013년	412,853	2,958	0.72	1%	185(47.3)	206(52.7)
2014년	387,328	3,530	0.91	1%	364(38.1)	591(61.9)
2015년	454,748	4,640	1.02	1%	416(43.5)	540(56.5)
2016년	468,179	5,312	1.13	1%	404(42.0)	558(58.0)

연 도	총 구매액 (억원)	우선 구매액 (억원)	우선 구매비율 (%)	법정율	충족 공공기관 (개소,%)	미충족 공공기관 (개소,%)
2017년	534,154	5,387	1.01	1%	455(45.1)	554(54.9)
2018년	537,965	5,757	1.07	1%	493(48.4)	525(51.6)
2019년	570,285	6,488	1.14	1%	549(53.9)	469(46.1)
2020년	628,356	7,024	1.12	1%	562(55.0)	460(45.0)
2021년	713,560	7,044	0.99	1%	549(52.9)	488(47.1)
2022년	742,799	7,005	1.01	1%	545(52.3)	497(47.7)
2023년	713,703	7,614	1.07	1%	585(56.3)	455(43.7)
2024년	722,061	7,896	1.09	1%	589(57.5)	435(42.5)

자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연속 미충족 공공기관 현황>

연속 미충족 기간	해당 연도	미충족 공공기관 (개소,%)
2년 연속	2023년 ~ 2024년	329(32.1)
3년 연속	2022년 ~ 2024년	279(27.2)
4년 연속	2021년 ~ 2024년	246(24.0)
5년 연속	2020년 ~ 2024년	209(20.4)
6년 연속	2019년 ~ 2024년	187(18.3)
7년 연속	2018년 ~ 2024년	173(16.9)
8년 연속	2017년 ~ 2024년	161(15.7)
9년 연속	2016년 ~ 2024년	144(14.1)
10년 연속	2015년 ~ 2024년	126(12.3)
11년 연속	2014년 ~ 2024년	76(7.4)
12년 연속	2013년 ~ 2024년	17(1.7)
13년 연속	2012년 ~ 2024년	15(1.5)
14년 연속	2011년 ~ 2024년	14(1.4)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기관과 국민의 인식을 함께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과 이후 1주일을 우선구매의 날 및 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내용을 집중 교육·홍보하려는 취지임.⁴⁾

□ 참고로, 기념일 및 기념주간의 지정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크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및 우선구매 주간 지정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념일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념일 지정에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주관 기념일 및 주간 현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4) 9월 9일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2025. 9. 9. ~ 9. 10.)의 개막일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함.

법정 기념일 지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및 우선구매 주간을 지정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주관 기념일 및 주간 현황〉

2025.12. 기준

연 번	명 칭	기 념 일	주 관 부 처	근 거 법 령 등
1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 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2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3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4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5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6	장애인 주간	4.20.~4.2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7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6.2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8	장애인학대 예방주간	6.22.~6.2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26.5.12. 시행예정
9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0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1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12	입양주간	5.11.~5.17.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13	구강보건의 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14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15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6	인구의 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7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18	사회복지주간	9.7.~9.1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19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20	자살예방 주간	9.10.~9.1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21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22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23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연 번	명 칭	기 념 일	주 관 부 처	근 거 법 령 등
24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25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26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27	호스피스 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28	아동학대예방의 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9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11.2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자료: 보건복지부